

의안번호	2115149
의 퇴 인	김도읍의원
회 답 일	2022. 4. 1.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소득인정액의 산정(안 제6조의3제1항제4호)

- 개별가구의 수급자 산정에 따른 소득평가 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은 제외함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소득평가 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제외하는 경우 수급자 수 증가 및 급여액 상승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급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해산장제 급여)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던 자가 신규로 수급자가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 - 생계급여의 경우, 기존 수급자의 급여액에서 차감 지급되었던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금액만큼 증가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자 및 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하고, 생계급여의 경우 기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 상승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

$$\begin{aligned} \circ \text{추가재정소요}_t = & \sum_i [(\text{신규 대상자 수}_{i,t}^{1)}) \times \text{평균 급여 단가}_{i,t}^{2)}) \times \text{신청률}_{i,t}) \\ & + (\text{생계급여 기 수급자}_t^{3)}) \times \text{평균 급여액 상승분}_t^{4)})] \end{aligned}$$

- 1) 대상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자 및 미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2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재산장제 급여 단가
- 3) 기 수급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이미 수급하고 있는 사람
- 4) 생계급여 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1인당 평균 보훈급여금액

- 그러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해당 요인으로 수급권 탈락을 우려하여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, 생계급여 기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 상승분 자료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곤란함

-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등의 기초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(단위: 명)

주: 1. 기초수급 범위는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연도별로 조사의 범위가 다름
(2018년 생계·의료·주거, 2019년 생계·의료, 2020~2021년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
2. 2021년은 6월 기준
자료: 국가보훈처

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
과 장 이진우
추계세제분석관 이윤경
연 락 처 02-6788-4742
 yoonklee@nabo.go.kr